「지하철 역사 전자파 신호등 설치·재배치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기반본부 전자파안전정보센터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1)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2)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3)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4)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6)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7)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 등의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9)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계약해제·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1)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⒀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타사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307, 2018.8.31.) 이에 우리 진흥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존중·보호의무를 준수하고,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합니다.

Ⅰ 과업개요

1. 사 업 명 : 지하철 역사 전자파 신호등 설치·재배치 용역
   ㅇ 자체조달,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2. 사업금액 : 금15,000,000원(금일천오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완료계 제출시 일시급(100%) 지불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60일

4. 추진배경 및 목적

   ㅇ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서울교통공사 업무협약(2026. 11. 4.)에 따라 일평균 이용객 5만 명 이상 지하철 역사에 전자파 신호등(주요 역사)과 소형 전자파 측정기(나머지 역사)를 순회 설치하여 시민이 역사의 전자파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5. 주요내용 : 세부내용은 「Ⅱ. 과업 내용」 참조

   ㅇ (설치·재배치)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전자파 신호등 4기와 소형 전자파 측정기(이동통신 특화형, 이하 "측정기") 4대*를 일평균 이용객 5만 명 이상 52개 역사에 순회 설치·재배치

   * 이동통신 특화형 소형 전자파 측정기 운용 대수 변동 가능

   - (신호등) 이용객 상위 10개 주요 역사에 6~9주 단위 순회(최초 설치 4건, 재배치 6건)
   - (측정기) 나머지 42개 역사에 1~2주 단위 순회(최초 설치 4건, 재배치 38건), 운영기간 18주(3~20주)
   - 역사 협조가 어렵거나 장비 장애 등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상 역사를 변경·제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설치 역사 수(52개)는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전 협의) 서울교통공사 협조문서를 바탕으로 설치 7일 전까지 역장

과 설치 일시·위치 협의

○ (설치 기준)

- 전자파 신호등 : 대합실 구석, 승강장 끝 등 이용객 통행에 지장이 없고 24시간 전원 공급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고, 안전펜스 등으로 안전구역 확보
- 소형 전자파 측정기 : 대합실 내, 역무실 인근, CCTV 감시 구역 등 이용객 통행에 지장이 없고 24시간 전원 공급이 가능하며 분실 우려가 없는 위치에 측정기를 설치

○ (장비 관리) 설치 후 표출 상태 및 측정자료 수신 확인, 장애 발생 시 1차 조치 및 발주기관 통보, 사업 종료 시 전 장비 회수·반납

○ (기록·보고) 장비별 인계대장, 설치·회수 사진, 주간 실적보고서 제출

6. 추진일정 및 절차

구분	주차	과업 내용	비고
입찰 및 계약	-	입찰공고 → 입찰서 제출 → 적격심사 → 계약 체결	-
착수·준비	1~2주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장비 인수·점검, 설치원 교육, 첫 설치 역사 역장 협의	-
최초 설치	3주	그룹별 첫 역사에 신호등·측정기 설치	8건
재배치	4~20주	운영 종료 역사에서 회수 → 같은 그룹 다음 역사에 설치	44건
최종 회수	21주	전 장비 회수·점검 후 발주기관 반납	8대
최종보고	22주	완료보고서 제출 및 최종보고	-
협의·보고	1~21주	역장 사전 협의, 인계대장 관리, 주간 실적 보고	매주

※ 주차는 계약체결일 기준이며,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II 과업 내용

1. 과업 개요

□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 (배경)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서울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전자파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2026. 11. 4.)을 체결하여 1~8호선 역사 전자파 모니터링 및 전자파 신호등 운영 추진

○ (목적) 이용객이 많은 역사 대합실에 전자파 신호등과 측정기를 설치하여 역사 전자파 수준을 측정하고, 시민이 생활 속 전자파 수준을 직접 확인하여 지하철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해소

□ 주요 과업내용

○ (사업 관리) 착수회의 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순회표를 바탕으로 역사별 설치 일정표, 인력 배치 계획 등 세부 수행계획 작성·제출

○ (사전 협의) 서울교통공사 협조문서를 바탕으로 설치 7일 전까지 해당 역장과 설치 일시·위치를 협의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

○ (설치·재배치) 신호등 4기는 주요 10개 역사, 측정기 4대는 나머지 42개 역사에 순회 설치·재배치

- 그룹별 순회 순서와 역사별 운영기간(신호등 6~9주, 측정기 1~2주)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며, 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52개 역사 순회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역사 협조가 어렵거나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상 역사를 변경·제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설치 역사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재배치는 운영 종료 역사에서 장비를 회수(신호등은 분해)한 뒤 같은 날 다음 역사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설치 기준)

- 전자파 신호등 : 대합실 구석, 승강장 끝 등 이용객 통행에 지장이 없고 24시간 전원 공급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고, 안전펜스 등으로 안전구역 확보
- 소형 전자파 측정기 : 대합실 내, 역무실 인근, CCTV 감시 구역 등 이용객 통행에 지장이 없고 24시간 전원 공급이 가능하며 분실 우려가 없는 위치에 측정기를 설치

○ (장비 관리) 설치 후 발주기관과 신호등 표출 상태 및 측정자료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 발생 시 1차 조치 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

○ (회수·반납) 사업 종료 시 전 장비를 회수하여 이상 유무 확인 후 발주기관에 반납

○ (결과물 제출) 주간 실적보고서(설치·회수 현황, 사진), 장비별 인계대장, 완료보고서 제출

※ 보고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전자파 신호등·측정기 설치·재배치 세부 운영 내용

○ 운영 원칙

- 4개 그룹(그룹별 인접 13개 역사)에 신호등 1기와 측정기 1대씩 배정
- 신호등은 그룹별 주요 역사(이용객 상위 10개 중 2~3개)에 6~9주씩, 측정기는 나머지 10~11개 역사에 1~2주씩 운영(18주)
- 주요 역사는 일평균 이용객(승하차 인원) 상위 10개 역사로 선정하고, 측정기 운영기간은 역사별 이용객 수에 따라 1주 또는 2주로 배분
- 역사 협조 불가, 장비 장애 등으로 설치가 곤란한 역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순서 변경·대체 또는 제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상 역사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운반장비·차량 등 이동 수단은 계약상대자가 준비

○ 그룹별 대상 역사

그룹	장비	역사 수	신호등 설치 주요 역사
1그룹	신호등 1기 측정기 1대	13개 (2+11)	서울·홍대입구 (도심·서북권)
2그룹	신호등 1기 측정기 1대	13개 (3+10)	종로3가·성수·건대입구 (동북권)
3그룹	신호등 1기 측정기 1대	13개 (3+10)	고속터미널·강남·잠실 (동남권)
4그룹	신호등 1기 측정기 1대	13개 (2+11)	신림·사당 (서남권)
합계	신호등 4기 측정기 4대	52개 (10+42)	이용객 상위 10개 역사

○ 그룹별 순회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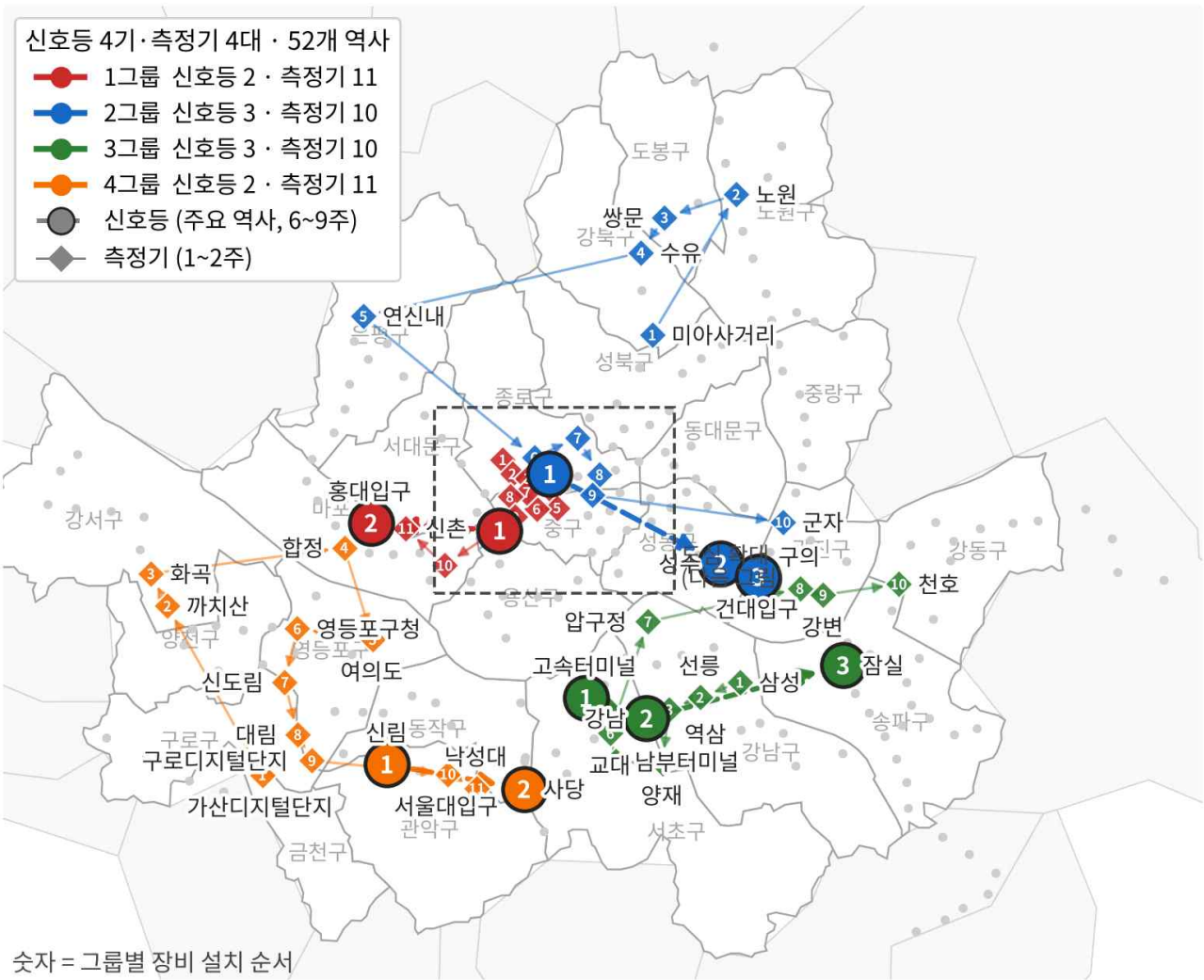

※ 원 안 숫자는 그룹별 신호등 설치 순서(점선 화살표), 마름모 안 숫자는 그룹별 측정기 설치 순서(실선 화살표)



※ 도심 구간 확대(1그룹 신호등 1번·측정기 1~10번, 2그룹 신호등 1번·측정기 6~9번)

○ 재배치 작업 절차

① 사전 협의	② 회수	③ 이동	④ 설치·확인	⑤ 기록·보고
사업책임자	설치원 2명	설치원 2명	설치원 + KCA	사업책임자
설치 7일 전	운영 종료 확인	운반장비 이용	조립·안전펜스	인계대장·사진
역장 일정 협의	신호등은 분해	같은 그룹 다음 역사	표출·수신 확인	주간 실적 보고

투입 인력: 현장 설치 인력 2명 이상(1명은 사업책임자로 협의·보고 겸임)

신호등 설치 4·재배치 6 / 측정기 설치 4·재배치 38(3~20주) → 최종 회수 8대(21주) | 출퇴근 혼잡시간대 작업 제외

○ 신호등·측정기 세부 순회표

순서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신호등	서울 (3~11주)	종로3가 (3~8주)	고속터미널 (3~8주)	신림 (3~11주)
신호등	홍대입구 (12~20주)	성수 (9~14주)	강남 (9~14주)	사당 (12~20주)
	-	건대입구 (15~20주)	잠실 (15~20주)	-
측정기	경복궁 (3주)	미아사거리 (3주)	삼성 (3~4주)	가산디지털단지 (3~4주)
측정기	광화문 (4~5주)	노원 (4~5주)	선릉 (5~6주)	까치산 (5주)
측정기	종각 (6~7주)	쌍문 (6~7주)	역삼 (7~8주)	화곡 (6주)
측정기	을지로3가 (8~9주)	수유 (8~9주)	양재 (9~10주)	합정 (7~8주)
측정기	충무로 (10주)	연신내 (10~11주)	남부터미널 (11~12주)	여의도 (9~10주)
측정기	명동 (11~12주)	안국 (12~13주)	교대 (13~14주)	영등포구청 (11주)
측정기	을지로입구 (13~14주)	혜화 (14~15주)	압구정 (15~16주)	신도림 (12~13주)
측정기	시청 (15~16주)	동대문 (16~17주)	구의 (17주)	대림 (14~15주)
측정기	회현 (17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18~19주)	강변 (18주)	구로디지털단지 (16~17주)
측정기	공덕 (18주)	군자 (20주)	천호 (19~20주)	서울대입구 (18~19주)
측정기	신촌 (19~20주)	-	-	낙성대 (20주)

※ 주차는 계약체결일 기준(3주차 = 순회 첫 주), 마지막 역사 장비(신호등·측정기)는 21주차에 회수하며, 대상 역사는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기타 요청 사항

□ 조직 및 인력 투입

○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 인력을 2명 이상 투입하고, 그중 1명을 사업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사업책임자는 역장 협의, 일정 관리 및 보고를 총괄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참여인력으로 사업을 수

행하여야 하며, 수행인력의 업무 진척도가 계획 대비 현저히 부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 업무수행 조건

- ㅇ 계약상대자는 착수회의 이전에 사업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일정 및 참여인력 등 세부 사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함
- ㅇ 역사 내 작업 시 서울교통공사의 출입 절차를 준수하고, 작업 전 역무실을 방문하여 작업 사실을 알려야 함
- ㅇ 이용객 안전을 위해 출퇴근 혼잡시간대 작업을 피하고, 작업 중 통행·피난 동선을 확보하여야 함
- ㅇ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장비가 분실·파손된 경우 배상하여야 하며, 책임 범위와 배상 기준은 계약 특수조건에 따름
- ㅇ 역사 협조 불가 또는 장비 장애 등으로 대상 역사를 변경·제외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이에 따른 설치 역사 수 변동과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재정경제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ㅇ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음. 다만,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안전관리

- ㅇ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짐
- ㅇ 신호등 분해·운반·조립 및 측정기 설치·회수 시 이용객과의 충돌, 장비 낙하 등이 없도록 작업 구역을 확보하여야 함

□ 보안조치

- ㅇ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역사 시설 정보와 측정자료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외부 유출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정보 비공개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지시에 따른 이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함

□ 기타 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및 상호 협의에 따름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3. 산출물 제출 및 보고사항

□ 산출물의 제출 및 검토・승인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승인을 받은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역사별 설치・재배치 일정표와 인력 배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산출물은 정해진 시기에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주요 산출물은 다음과 같음
- 사업수행계획서(역사별 설치 일정표, 인력 배치 계획 포함)
- 주간 실적보고서(설치・회수 현황, 다음 주 계획, 장애 발생 내역)
- 장비별(신호등・측정기) 설치・회수 사진

- 완료보고서 및 완료계

ㅇ 완료보고서 및 완료계는 파일로 제출

□ 정기 및 수시보고

ㅇ 사업수행 진척상황 및 주요 이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다음의 보고 유형에 따라 착수보고, 주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수시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구분	주요 내용	시기	보고방법
착수보고	ㅇ 사업수행계획 보고 ㅇ 역사별 설치 일정·인력 배치 협의	계약 후 10일 이내	보고회
주간보고	ㅇ 설치·재배치·회수 실적 ㅇ 다음 주 설치 계획 및 역장 협의 결과 ㅇ 장애 발생 및 조치 내역	매주	서면
중간보고	ㅇ 운영 전반기(3~11주) 결과 보고 - 계획 대비 일정 변경사항 - 미설치·변경·제외 역사 현황	11주차 종료 후 7일 이내	서면
최종보고	ㅇ 사업추진결과 보고 ㅇ 장비 회수·반납 결과 ㅇ 최종 산출물 제출	최종 회수 후 7일 이내(22주)	보고회
수시보고	ㅇ 장비 장애, 안전사고, 역사 협조 불가 등 주요 현안 ㅇ 대상 역사 변경·제외 협의	필요시	서면 또는 유선

※ 내용 및 시기 등은 추후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진도 관리를 위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수시회의를 개최함

4. 유의사항

ㅇ 발주기관은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재정경제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III 입찰안내

1. 입찰방식 : 자체조달,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기타물품설치서비스(세부품명번호: 72154090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문의처

ㅇ 사업담당 : 전파기반본부 전자파안전정보센터 주신웅 과장
- 연락처 : 061-350-1606 / e-mail : jsw21203@kca.kr

ㅇ 계약담당 : 운영지원단 재무회계팀 김도현 대리
- 연락처 : 061-350-1343 / e-mail : dohyeon021@kca.kr

Ⅳ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별지 제2호]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별지 제1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회 사 명 :

주소(소재지) :

성명(대표자) :

본인은 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전자파 신호등 설치·재배치'**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제출일 기준)

번호	성명	담당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비고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에 대하여 기재